

한국에서 공화(共和)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정상호 | 서원대학교

| 국문요약 |

본 논문은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공화 개념의 기원과 정착 과정에서 두 가지 점에서 서구와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공화와 화평과 단합을 강조하는 대동사상과의 연관성이다. 동양에서 대동사상은 중국의 캉유웨이, 쑨원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정초에 이르기까지 공존과 화합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지칭한다. 그러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국체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의 공화 개념이 공동선의 지향이나 시민참여와 같은 통치의 에토스보다는 국가의 정부형태라는 의미로, 즉 미국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와 유사한 경로를 밟게 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동아시아라는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역동적인 공화 개념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공화 개념의 민주화가 학교나 헌법과 같은 제도나 공식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서구와 달리 4.19혁명에서부터 최근의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민주화 운동을 통해 진전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공화, 공화주의, 민주공화국, 헌법 제1조, 유진오, 바론테제, 코젤렉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542)

I. 문제의식: 공화 개념의 발전사 연구의 필요성

본 논문은 근 한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이 땅에서 공화의 개념사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¹⁾ 개념사 연구는 최근 붓물을 이루고 있는 공화주의 연구가 갖는 공백과 한계를 메워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공화의 개념사 연구는 비교의 관점을 갖게 함으로써 학문 영역별 공화 연구가 갖는 분산성과 고립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는 학문 분야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헌법학 연구는 주로 헌정사의 관점에서 헌법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연원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개념사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학 연구의 결정적 취약점은 엘리트주의적 해석의 문제이다. 그것이 엘리트주의인 까닭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헌법 제정자의 사상과 논거를 해명하는 데만 몰두하여 왔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거기에는 개념사가 주목하고 있는 당대 보통 사람들의 인식 및 이해가 송두리째 빠져있다.

둘째는 역사학적 접근이다. 역사학 연구들은 한국에서 공화의 기원(origins)을 해명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들은 해방 이전 개화파와 독립운동 세력의 이념적 지향과 운동적 실천의 맥락에서 한국의 공화 개념사의 전사(前史)를 복구해 냈다. 신용하는 이미 1880년대 이후 개화파가 입헌군주제 사상을, 독립협회가 입헌공화국의 수립을 주장하였고, 신민회는 국권회복과 동시에 입헌공화국의 수립을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밑거름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화제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신용하 1986). 이후 신민회가 공화제를 지향했다는 주장은 이후 학계의 정설이 되다시피 하였다(이승현 2006, 73). 그러나 역사학계의 연구는 이 땅에서 있었던 공화의 전사(全史)를 채우기에는 이론적으로 빈약하고, 시야가 너무 근대 초기에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이

1) 공화의 개념은 정체(regime)로서의 공화국과 사상으로서의 공화주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논의의 맥락에 따라 함께 다루고 있다. 조승래는 공화국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공화주의로 정의하고 있다(조승래 2010, 33)

분야의 대부분 연구들은 공화의 의미를 서구에서 발전한 공화주의 이론의 장구한 계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 근대사의 협소한 맥락에서만 해석하여 왔다.

정치학 연구들은 열심히 공화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서구의 새로운 논쟁을 제시함으로써 공화와 관련된 논의를 주도하여 왔다. 곽준혁(2005; 2008), 김경희(2007; 2009), 이동수(2007; 2010) 등은 자유와 비지배 등 공화주의의 원리와 계보, 유형 등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꾸준히 제출하여 왔다. 그것의 결과로써 한때 “공익을 도외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이나 파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관행이나 처세방식”을 의미했던 마키아벨리즘(강정인 2009, 30)은 이제 ‘공존의 정치’(김경희 2013)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학 연구들은 대체로 공화가 던지고 서 있는 한국적 맥락(topos)을 간과하여 왔다. 다소 과장하자면 정치학은 ‘이론의 과잉 속에서 공화의 유구한 역사를 간과’하여 왔다. 다행히 최근 한국사의 맥락에서 공화주의를 다루고 있는 참신한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임채원·도명록, 2013; 장진숙 2012). 하지만 이러한 논문들은 시야를 1980년 광주항쟁과 87년 6월 항쟁, 최근의 촛불시위 등 지나치게 민주화운동의 관점과 사회운동의 계기에만 맞추어 공화의 역사를 민주화 단계로 한정하는 의도하지 않은 제약 효과를 낳고 있다.

개념사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공화 연구의 한계, 즉 헌법학이 결여한 당대 시민들의 사유 방식의 궤적을 해명하며, 역사학이 노정하고 있는 이론적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설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학이 안고 있는 현장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

II. 한국에서 공화 개념의 역사적 형성 과정

1. 조선시대의 공화 개념: 화평과 대동의 사상

“한국의 근대화는 번역의 사대주의를 내재하고 있는 중역(重譯)한 근대”(김욱

동 2010, 58)였다는 주장은 절반만 옳다. 왜냐하면 공화는 민족이나 의회와 같이 서구에서 유입된 개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자생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밝혀 놓은 것처럼 『史記·周本紀』에 의하면 기원전 841년 서주의 여왕(厲王)이 폭정으로 민란에 의해 쫓겨난 후 召公과 周公 두 재상이 정사를 행했는데, 이를 공화라 했다(이영록 2010, 53).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공화의 어원과 유래를 설명하면서 “왕이 없는 때 신하들이 다스린 것이기 때문에, 왕정 하에서 공화를 말하는 것은 불경 내지 반역에 해당”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박찬승 2008, 308). 이들은 그 근거로 광해군 일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이이첨(李爾瞻)과 한계(韓誠)의 논쟁을 제시하고 있다.²⁾

“신이 또 들으니, 이첨이 감히 차자 가운데에서 ‘공화(共和)’라는 두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조정은 전하의 조정으로서 어진 자를 등용하고 어질지 못한 자는 물리쳐버리면 될 뿐인데, 공화라는 말이 어떻게 이첨의 입에서 튀어나온단 말입니까. 주(周)나라 여왕(厲王)이 체(虢) 땅으로 달아나자 공화라는 칭호가 있었으니, 그렇다면 이는 조정을 이첨이 주관하는 개인의 물건이라 여기는 것입니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저도 모르게 통곡이 나옵니다(광해 14년, 1622년 8월 10일).”

爾瞻敢於箚中，有共和二字云。(云，然則)朝廷者，是殿下之朝廷也，賢者進之，不肖者退之而已，共和之語，何爲出於爾瞻之口乎？周厲王奔虢而有共和之號，則此以朝廷，爲爾瞻主宰之私物耶？言念至此，不覺痛哭。

이를 근거로 학계에서는 “공화의 정치란 국왕이 부재한 상태에서 몇몇 권세가들이 조정을 사적인 물건이나 도구로 여기고 천단(擅斷)하는 좋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으로 금기시되어 왔다”는 주장(박현모 2007a, 59)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폭 넓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에 공화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총 18

2) 이하의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에서 공화를 검색한 결과이다.

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의 부재와 같은 변란이나 공백의 뜻이 아니라 화평과 대동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더 많기 때문이다. 다음은 공화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몇 가지 사례들이다.

“조정이 화평해졌으니, 각자가 자신의 직분을 닦아서 사사로운 혐의로 서로 모해하지 말 것이며 당파를 만들어 허위 사실로 대소의 신민들을 모함하지 말아서, 조야가 모두 화평하도록 기강을 닦아서 밝히도록 하라. 조금이라도 전과 같은 기미가 있으면 대신이거나 대간이거나 시종이거나 간에 곧 발의(發議)하여 크게 다스려서 그 짝이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중종 32년, 1537년 11월 10일).”

自今以後，朝廷和平，各修其職，勿以私嫌相害，勿爲作黨，構成虛事，傾陷大小民臣，俾朝野共和，修明紀綱。少有如此幾微，則或大臣、或臺諫，侍從，卽發大治，勿令滋蔓。

“백년된 고질병을 치료할 약을 구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만, 신에게 최상으로 여겨지는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께서 이렇듯 화창한 계절에 정전(正殿)을 활짝 열어 백료(百僚)를 나아오게 한 다음 향기로운 술자리를 베풀고 직접 분부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가 장차 망하게 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말씀하시어 **함께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할 뜻으로** 타일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묘(宣廟)께서 직접 지으신 ‘신하들이여 오늘 이후로 동이니 서이니 다시 또 할 건가’라는 시를 각자 풍송(諷誦)케 하여 한 방 안에 화기(和氣)가 넘쳐 흐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인(黨人)도 신하인데 직접 명을 받든 마당에 누구라서 마음을 풀지 않겠으며 그 동안의 행동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편당(偏黨)하는 폐단도 조금 수그러들 것이고 나랏일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현종 3년, 1662년 4월 4일).”

百年痼疾，救藥實難，臣有一策。莫如自上趁此和煦之時，大開正殿，登進百僚，宣以香醞，賜以天語。悶然於國家將亡，諄諄然垂涕泣而道之，**喻以共和之意**。且以宣廟御製朝臣今日後，尙可更西東之詩，使各諷誦，藹然一堂，和氣可掬，則黨人卽人臣也，親承命面，孰不釋然于中，而改前之爲哉？如是則偏黨之弊，庶可少弛，而國事可做也。

첫 번째 인용문은 봉당(朋黨)의 문제를 인식하고 최초로 탕평론을 모색하였던 증중이 대신들에게 내리는 교서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증중은 사사로이 작당(作黨)하지 말고 단합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럴 경우 직위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두 번째의 예문은 민여로(閔汝老)가 병을 이유로 사직하면서 현종에게 봉당을 제거할 것을 청하는 내용인데, 공화는 당인(黨人)과 편당(偏黨)의 폐단과 반대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화평과 단합을 내포하는 공화의 용법은 공화가 불경의 언어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보다 더 자주 발견된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숙종 32년(1698)에 호조 참의 이광적(李光迪)이 올린 상소문이다. 여기에서 이광적은 선왕의 덕을 스승으로 마음을 보존한다면 주나라에서 함께 화평한 그 아름다움(周室共和之美)을 오늘날에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잠(箴)을 올렸고, 이에 만족한 임금이 비답을 내려 칭찬하고, 특별히 호피(虎皮) 1령(令)을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공화가 불경의 금기어였다는 주장들(박현모 2007a; 박찬승 2008)이 근거로 삼고 있는 예문 역시 논쟁적이다. 왜냐하면, 공화가 왕실의 공백을 틈탄 신권의 자의적 통치를 뜻한다는 한계의 해석에 대해서 헌납(獻納 閔錫)은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이침이 올린 기사 가운데에 ‘마음 속으로 나랏일을 걱정하여 다시 화합할 마음을 먹고 영상과도 서로 좋게 지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흉악한 무리들은 날마다 이러한 공화(共和)를 무너뜨리려고 일삼고 있다.’는 등의 말이 있었으니, ‘협화(協和)’니 ‘상화(相和)’니 ‘공화(共和)’니 하는 문자는 대개 서로 통용하는 말 들인 것입니다. 이이침이 설령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의 공화’에 대한 문자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역적 한계는 어찌하여 주(周)나라 본기(本記)에서 말한 ‘주 선왕(周宣王) 때에 주공과 소공이 함께 공화의 정사를 행하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굳이 여왕(厲王)이 체(錢) 땅으로 도망한 때의 일을 일컫는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교묘하고 악랄하지 않습니까(광해 14년 1622년 8월 11일).

李爾瞻啓辭中，有竊憂國事，復以協和爲心。領相勉以相好，兇徒日以壞，此共和爲事云(等語)者，協和，相和，共和文字，蓋用互文也。李爾瞻設用周、召之共和文字，賊誠何不稱周之本記所謂周厲王時周、召行政共和之事，而必稱厲王奔錢之時，不亦巧

且慘乎?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共和는 여왕(厲王)이 체(纘) 땅으로 도망가는 권력 공백 상황과 주 선왕(周 宣王) 때에 주공과 소공이 함께 14년간 공화의 정사를 행하였다는 이중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심은 두 가지 용례 중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후자의 의미를 배제한 채 전자의 불충한 뜻만 헤아려 고해바친 한계의 불순한 의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민심의 비판 속에서 당시에 ‘협화(協和)’니 ‘상화(相和)’니 ‘공화(共和)’니 하는 말들이 서로 통용하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필자가 조선 시대에 사용되었을 공화의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는 데에는 나름 중요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형태로든 근대 정치이념이든 공화라는 개념이 커다란 저항 없이 일찍 정착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공화를 당파와 당쟁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화평·공영·공존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토착적 사유가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의 공화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중국의 문헌에 근거를 두고 있다. 『詩經』 열조(烈祖) 편은 탕 임금의 대동화합정치를 찬송하였으며, 현조(玄鳥) 편은 탕 임금이 ‘대동공화(大同共和)의 정치’로 중정공평(中正公平)한 세계를 건설한 것을 찬송하고 있다(서정기 2001, 489).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신채호는 대동 세상(大同 世上)을 내걸고 대동계를 이끌었던 정여립(鄭如立)에 대하여 ‘동양 최초의 공화주의자’라고 칭송하였다(전지성 2011, 120).

만약 공화가 필자의 주장대로 대동과 화평을 지칭하는 정치적 의미로 통용되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군주가 사라진 해방 이후에도 좌우 가릴 것 없이 공화라는 개념이 그렇게 쉽게 확산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된다. 그리고 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갈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포용하려는 마키아벨리나 메디슨의 공화주의와 달리, 갈등을 부정하고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공화주의에 대한 한국적 또는 동양적 맥락의 역사적 기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식민 시대의 공화 개념

1) 개화파의 공화 개념

개화기에 들어서 공화 개념의 외연과 내포에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변화는 중화의 共和가 아니라 서구의 공화(republic) 개념이 일본을 걸쳐 수입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먼저 세계 각국의 국체(國體)에 관심을 보였다.³⁾ 와타나베 가잔(渡辺崋山)의 『외국사정서(外國事情書)』(1839)에는 미국이 repyufur ki(レピユフレキ)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어 republiik, republiek(영어로는 republic)에 해당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츠클리 쇼고(箕作省吾)의 『곤여도지(坤輿圖識)』(1845)에 나타나는 ‘공화정치, 공화국’과 스기타 겐탄(衫田玄端)의 『지학정종(地學正宗)』(1848)에 나타나는 ‘합중국’이다. 양자가 모두 republiik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는 미국식 정치 제도가 ‘공화국, 공화 정치’로 표현되기도 하고 ‘합중 의정의 나라, 합중국’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공화국’과 ‘합중국’은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史記』에 나온 공화를 republiik에 대한 번역어로 전용하였다는 점에서 ‘공화국’은 일본에서 만든 신생 한자어인 셈이다(손민 2001).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공화주의를 다룬 대개의 연구들은 개화파들의 입헌군주론을 그것의 효시였다고 주장하여 왔다. 먼저, 한국에서 공화라는 의미가 정체나 국체를 지칭하는 학술적 차원에서 사용된 최초의 사례는 1881년 60여 명의 朝士視察團의 일원이었던 민종묵(閔種默)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쓴 『문견사건(聞見事件)』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서구의 삼권분립 개념에 입각하여 3원(太政官, 元老院, 大審院) 10省의 중앙정치 제도가 거의 정착단계에 있었고, 민권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 민종묵은 ‘政體·憲法·自由

3) 일본의 서양식 근대화는 네 가지 경로를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메이지 정권 입안자들은 외국인 교사와 교관을 초빙하여 서양 문물을 직접 가르치게 하였다. 둘째, 일본 유학생들을 선진 외국에 보내어 그들의 학문을 배우게 하였다. 셋째 정부와 사찰단을 파견하였으며, 넷째 외국의 중요한 문헌에 대한 번역이다(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2000, 25).

權'과 같은 근대적 정치개념을 최초로 조선에 소개한 인물이었다. 그는 공화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허동현 1994, 121).

"각국의 정체는 한결같지 않다. 첫째는 君民共治라 하는데 佛國의 경우이다. 둘째는 立君獨裁라 하며 魯國의 경우이다. 셋째는 貴族政治라 하는데 英國의 경우이다. 넷째는 共和政治라 하며 亞國(美國)의 경우이다. 세력으로 최강자는 魯國이며情으로 최강자는 亞國이며, 正으로 최강자는 英國이다. 일본이 설치한 大審院은 영의 審理, 元老院은 영의 上院, 그리고 府議會는 英의 下院과 같다.

各國政體不一 一曰 君民共治 佛國也 二曰 立君獨裁 魯國也 三曰 貴族政治 英國也 四曰 共和政治 亞國也 以勢最强者 魯國也 以情最强者 亞國也 以正最强者 英國也 日本之役大審院即英之審理也 元老院即英之上院也 府會議如英之下院 英國政治取以君權 不以民權 役上院下院以得其中也 故日本多做之云

또 하나의 중요한 문건은 시찰단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財政과 회계를 보고한 이헌영(李憲永)의 『日槎集略』(1881)인데, 거기에는 國體(國體)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손민 2001).⁴⁾

“國체의 조직을 대별하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주 전제, 둘은 군주 전치, 셋은 귀족 전치, 넷은 군민 공치, 다섯은 합중 정치입니다. 그 중 지공 지명한 것은 합중 정치이며, 그 다음은 군민 공치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지 못하면 곧 그 나라를 문명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백성을 죽히 유식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세 가지 정치는 미개한 인민이나 복종하고, 어리석은 야만이나 달게 여기는 것이니…”

國體之爲組織也大別萬國爲五種 一曰君主專制 二曰君主專治 三曰貴族專治 四曰

4) 기존의 연구들(박찬승 2008; 김육훈 2012)은 한국에서 오늘날과 같은 맥락에서 ‘공화’라는 단어가 쓰인 최초의 사례로써 “서양에 여러 나라가 있어도 정치는 다만 두 종류가 있으니, 즉 군민동치(君民同治)와 합중공화(合衆共和)가 그것인데, 모두가 이를 입헌정체라 일컫는다.”(『한성순보』1884, 1.30)를 뽑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소개된 이헌영의 『日槎集略』(1881)의 시론(時論)을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君民共治 五曰合衆政治 而其至公至明者爲合衆政治 次爲君民共治 就此二者 而非擇其一則 其國不可稱文明 其民不足稱有識 其他三政者 未開人民服之 渾沌野蠻甘之 (散錄 中田武雄書).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까지 개화파의 공화 개념은 군주가 없는 민주국가, 입헌군주, 군민공치, 공화제 등 그 뜻이 명확히 분립되지 않은 채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조차 1880년대에 이르러서야 ‘합중국’은 주로 America나 The United States에 대한 번역어, ‘공화국’은 republic에 대한 번역어로 구분이 정착되었다는 사실(손민 2001)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화파들의 공화에 대한 이해와 선호는 민권이나 인민주권론에 기초한 군주 부정론이 아니라 ‘군민공치에 입각한 입헌군주론’이라는 정치체제의 관점에만 갇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화에 대한 민중목의 해석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일본이 모방하고 있는 영국식의 귀족정치가 君權을 중심으로 양원을 설치해 민권을 조화시킨 중도적 정체로써 ‘正’에 가장 부합하는 정체인 반면, 미국의 공화정치는 이치상 합리적이거나 중용을 얻지 못한 것이다(허동현 1994, 125). 유길준(俞吉濬)도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에서 정부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다섯 번째가 ‘國人之共和호는政體’는 또는 合衆政體였다. 하지만 그가 가장 선호하였던 것은 공화 정체가 아니라 ‘군민공치 또는 立憲政體’이다. 그는 그 근거로 “이 정체는 그 國 중에 법률과 정사의 전반과 대권을 군주 일인이 독단하는 것이 없고, 의정의 여러 대신이 반드시 먼저 작정하고 군주의 명령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박현모 2007, 64-65).

개화파의 공화주의가 ‘군민공치에 입각한 입헌군주론’이라는 정치체제에 치우쳐 있다는 필자의 주장은 역사학계가 최초의 공화주의 결사체로 지목하여 온 독립협회나 신민회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적어도 한일합방 이전까지 개화파 지식인들이 바람직하게 여겼던 정체는 군주를 부정한 공화주의가 아니라 입헌군주제였다. 유길준은 분명하게 공화제의 핵심이 세습군주를 대신하여 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世傳호는君主의대에大統領이其國의最上位를居호며最大權을)을 갖는 정체임을 알고 있었다. 독립신문을 창간한 독립협회 역시 열강의 침략의

위협 하에서 전제군주제가 국왕의 동의 하나만으로 국권이 박탈될 수 있는 취약한 체제임을 절감하고 입헌 군주제의 수립을 정치 운동의 목표로 삼았다(박현모 2007a, 62). 프랑스나 미국의 비군주 공화제와 달리 한국의 개화파가 처음부터 입헌군주론에 매여 있었음은 여러 가지 사실로 뒷받침될 수 있다. 한국적 의회인 중추원이 무산된 계기 중 하나는 “독립협회 세력이 공화정으로 체제를 바꾸고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삼으려 한다”며 ‘공화정 수립 음모론’을 고종에게 고한 조정식의 고발이었다. 또한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 28일에서 11월 2일까지 6일간 서울 종로에서 개최된 관민공동회의 규정 중 첫째 항목으로 “황제와 황실에 불경한 언행은 엄금하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옹호하는 연설을 금지”하기도 하였다(박현모 2007a, 67).

2) 공화국을 찾아서: 공화 개념의 시간화⁵⁾

1910년은 공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그 사건 이후 복벽운동과 입헌군주론 등 군주를 전제한 일체의 사상 분파는 소멸의 경로를 밟게 되었다. 사실 계몽군주를 전제한 복벽운동은 1919년 3.1 운동 전후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유인석 등 유림파가 주도하였던 복벽운동은 군주제가 외세의 내정 간섭을 초래할 수 있는 선거제보다 국민통합과 정치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어 훨씬 우월한 제도라는 논리를 깔고 있었다. 이들은 실제로 의친왕을 망명시켜 임시정부의 수장이자 독립 이후 왕정복고의 주역으로 옹립하려는 대동단을 결성하였고, 한성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⁶⁾ 그러나 경술국치로 옹립할 군주가

5) 코젤렉과 그의 동료들은 1972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25년에 걸쳐 『개념사 사전』(총8권)을 편찬하였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진보, 평화 등 총 119개의 역사적 기본 개념이 수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기본 개념들은 ‘전반적으로’ 시간화, 민주화, 이데올로기화, 정치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개념의 시간화란 근대의 정치사회적 개념이 목적의식에 맞게 어떤 역사적 단계나 국면에 위치 짓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정리는 박근갑(2009)을, 한국적 맥락에 적용한 연구로는 정상호(2013)를 참조.

6) 한성정부 사건은 1919년 4월 23일 이규갑, 홍진 등을 중심으로 비밀독립운동본부를 만들고 13도 대표자회의를 통해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열어 임시정부를 승인받으려는 계획을 뜻한다. 사전에 누설되어 행사를 성사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국민대회취지서와 임시정

사라졌고, 더구나 중국에서 공화제를 천명한 신해혁명(1911)이 성공하자 더 이상 계몽군주나 입헌군주를 전제한 공화제의 초기 형태는 발붙일 근거를 상실하였다.

둘째, 1910년 이후 등장한 공화는 이제 입헌군주론이 아니라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이라는 보다 급진적이고 근대화된 이념적 비전으로서 공화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근대의 정치사회적 개념이 목적의식에 맞게 어떤 역사적 단계나 국면에 위치 짓는 ‘개념의 시간화’라는 개념을 상기하는 것이 유용하다. 코젤렉에 따르면, 서구에서 공화주의 개념은 18세기 이후 더 이상 현존하는 정치적 사실 관계를 묘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 달성되어야 할 완전한 국가의 이상과 기대를 담은 개념이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9세기까지 공화는 정부나 국민과는 달리 지식인들 세계에서조차 낯선 단어였다.

<표 1> 독립신문에 나타난 주요 서구 개념의 출현 빈도

	1896	1897	1898	1899
민권			14	
국가	30	39	94	47
자유	5	12	24	34
권리	33	162	154	122
정부	311	419	750	500
공화	1	0	4	1
국회	0	0	4	4
정당	4	1	5	2
국민	24	23	39	12
인민	326	429	542	235
백성	447	453	762	814
동포	17	24	82	25
사회	1	2	5	11
나라	511	1034	1159	1296
자기	231	342	141	307

출처: 김동택(2006, 223); 박주원(2002, 227)에서 제작성

부선포문을 배포하였고, 이때 共和 만세의 깃발과 대조선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연구는 신복룡(2004)을 참조.

그러나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불과 20여년이 안되어 민주공화국이라는 깃발과 구호는 좌파와 우파의 구분 없이 모든 정치세력이 표방하는 국가의 이념이자 존립 근거가 되었다. 특히 헌법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1조에서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의미이다. 성문화된 규정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공화제를 천명했다는 사실이 갖는 놀라움은 논외로 치더라도 민주라는 수식어와 결합한 ‘민주공화’라는 용어를 삽입한 임시헌장 기초자들의 독창성, 그리고 그것이 이후의 역사에서 한 단어로 확고하게 굳어진 용어적 확정력은 공화의 개념사에서 적극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이영록 2010, 57). 아울러 “임시헌장의 민주공화제 규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많은 헌법문서들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신우철 2008, 300). 그러나 어원의 독창성과 대별되게 임시헌장 제정 당시 이를 둘러싼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언급된 민주공화의 의미는 군주제의 배격과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정체의 지향을 표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표 2〉 헌법에 나타난 민주공화국의 변천사

명칭	제정년도	내용
대한민국임시헌장	1919.4.11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임시헌법	1919.9.11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임시헌장	1925.4.7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함
임시약헌	1927.3.5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임시약헌	1940.10.9	제1조 대한민국의 국권은 국민에게 있되, 광복완성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다.
임시헌장	1944.4.22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대한민국헌법	1948.7.17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출처: 김동훈(2011, 254)에서 재인용

이 시기에 공화는 개화파이든 독립운동 세력이든 일상을 지배하는 헌정 원리가 아니라 선진국과 주권국의 미래 비전이였다. 신민회의 사실상 기관지였던 『대한매일신보』(1910.2)에 나타난 공화의 세계는 “서양은 암흑시대가 지나고 황

금시대가 復回하여 문명의 기운이 정신계와 물질계와 팽창하여---중략---인민의 복이 日로 大하여 전제 봉건의 구습이 去하고 立憲共和의 福音이 遍하여 국가는 인민의 낙원이 되며,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 되어, 맹자의 輔世長民主義가 실행되며 루소의 평등자유정신이 성공되었다”는 논설이 실려 있다. 반면, 조선 사회는 “오직 도덕이 부패하며, 경제가 곤핍하며, 교육이 부진하며, 만반의 권리가 他手に 歸하여 民氣의 타락이 극도에 달하여” 있다(박찬승 2008, 326에서 재인용).

이처럼 주권 상실의 상황에서 공화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도래해야 할 천년 왕국의 복음의 언어였다. 왜냐하면, 식민 조선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화의 핵심인 평등한 참정권을 박탈당한 제국의 신민이었기 때문이었다. 경술국치와 더불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일본제국의 臣民으로 재규정되었다(강동국 2009, 287). 일제가 강제하였던 皇國臣民의 본질은 공화국의 시민이 아니라 식민지 주민으로서 제국의 명령과 동원에 묵묵히 따르는 충량한 공민 또는 선량한 내지인이었다. 이렇듯 참담한 상황에서 공화는 언젠가는 획득되어야 할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정부형태이자 확고한 국가이념이었던 것이다.

3. 해방이후 산업화 시대의 공화 개념

1) ‘공화주의’ 없는 공화국의 범람

해방이후 공화의 개념을 둘러싸고 몇 가지 주류적 견해가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나는 건국헌법 제정의 핵심 인물인 유진오의 설명에 따라 공화국은 비군주국으로서의 국체를 가리키며 민주국은 권력분립 원칙이 지켜지는 정체를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이제 민주공화국은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국”이라는 해설이 헌법학계의 통설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개화파 이래로 이어져온 국가형태로서의 공화주의가 압도적 위치를, 달리 말해 서구에서 발원한 국가목표로서의 공화주의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아직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⁷⁾

흥미로운 점은 해방 이후 실질적으로 군주제가 철폐된 공화국의 시대가 도래

되었지만 모든 정부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을 진정한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대변자로 자칭하였고, 대중적 수준에서 공화국의 의미는 정부형태와 헌정의 구조적 변화를 지칭하는 헌법적 개념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일찍이 최장집은 한국의 자유주의가 “보수 세력에 의해 오염되고 비판적 운동세력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묘사한 바 있다(최장집 2002, 167).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이러한 지적은 공화국과 공화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유진오의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초헌법적 유신체제는 제4 공화국으로, 내란죄와 반란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1997.4.17)받은 전두환 군사정권은 제5 공화국이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명칭을 갖게 되었다.

만민공동회 등 소통과 통합을 중시한 개화파들을 공화주의에 초점을 둔 민주주의라는 뜻에서 ‘자생적 공화민주주의’(이동수 2007, 8)로 규정한 것은 다소 과장되기는 하였지만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 분단의 일 원인을 민주공화국에 대한 주요 정파들의 상이한 인식, 즉 민족의 자유에 기초한 민주적 공화제를 지향했던 김구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적 공화주의’, 여운형의 ‘대중민주주의 공화제’, 그리고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민민주공화제’라는 상이한 인식과 지향에서 구하는 것은 도대체 공화주의가 아닌 사상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남기게 된다.

7) 이제일(2011, 91)은 국가목적으로서의 이념적 공화주의와 국가형태로서의 제도적 공화주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3〉 공화주의 사상의 유형적 분류

	국가목적론		국가형태론
	개발공화주의	보호공화주의	反군주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참여의 본질적 가치 - 참여와 심의의 덕의 연마 - 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공공선지향 - 참여로서의 공적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국가목적으로서 공공선 - 비(지배로서) 자유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 법률에 기반한 국가행위 - 권력통제를 위한 혼합정 - 공직사상, 공직윤리, 공공선지향으로서의 시민적 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군주제이거나 공화국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마키아벨리). - 세습되는 일인지배 체제의 대립어로서 사용.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해링턴, 아렌트, 포커, 선스타인 등	키케로, 마키아벨리, 몽테스키외, 매디슨, 칸트등	마키아벨리이후 많은 이들에 의해 빈번히 통용됨

공화주의가 ‘보수주의로부터 오염’되었던 대표적 사례는 박정희 정권이다. 박현모(2007b)는 공화주의의 핵심을 대표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강조, 시민의 덕성에 대한 강조, 정당에 대한 부정적 시각, 대의제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한 후 박정희는 유신 선포 이전에는 공화주의의 요건을 갖춘 ‘민족적 공화주의자’였으며, 유신 이후에는 민족주의를 보다 강조한 ‘공화적 민족주의자’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론이든 운동이든, 계발공화주의든 보호공화주의이든(데이비드 헬드, 2010), 강한 공화주의이든 약한 공화주의이든(이명순 2007) 공화주의의 핵심적 요소는 가치 측면에서는 시민 참여, 공동선의 추구, 비지배 자유 등이며 제도 차원에서는 혼합정체나 법의 지배가 된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동안 계엄은 3번 선포되어 합계 31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같은 기간 중에 위수령이 3번에 합계 5개월 동안 발동됐고, 각종 비상조치가 9건 60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이들 비정상적 기간을 합치면 105개월로 박정희의 전체 집권 기간의 절반에 해당된다(오병헌 1993, 500). 또한 박정희 정권은 시민참여가 아니라 새마을운동과 국민현장을 통해 전대미문의 동원 체제를 가동해 ‘조국근대화를 위한 열사봉공의 국민적 집단주체’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새마을교육 실적은 합숙교육 67만 8천명, 단기 교육 연인원이 6,953만 명에 달한다. 1975년 인구는 34,706,620인데, 이는 전 국민이 해당 기간 동안 2회 이상 교육에 동원된 셈이 된다.

지금까지 공화국의 개념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장 유쾌한 사회적 현상은 일반 시민들이 전개하였던 ‘의미의 전복’이었다.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은 군사독재정부가 자신의 정권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표방하자 대중들은 거꾸로 공화국이라는 단어의 기의에 무소불위의 권력의 이미지를 덧 씌어 버렸다. 이제 공화국은 이소노미아(비지배 균형)라는 지향해야 할 가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 없는 권력 집중과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지양해야 할 부정한 현실을 꼬집는 비판적 개념이 되었다. ‘재벌 공화국’, ‘삼성 공화국’, 그리고 ‘서울 공화국’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2) 공화 개념의 이데올로기화: 두 개의 공화국으로의 분화 과정

이데올로기화는 개념이 특정 이데올로기로 편입되는 상황과 방식을 의미한다.

이질적인 두 개의 분단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공화의 개념사를 연구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유진오의 독창성과 선구성은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공화주의 이론을 분단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정교하게 결합시켰다는데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유진오는 헌법 제정 당시 국민 개념보다는 시민권과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인민 개념이 헌법 취지에 보다 적합하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인민이라는 말은 구대한제국 절대군주제하에서도 사용되던 말이고 미국헌법에 있어서도 인민 people, person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 citizen과는 구별되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을 의미하므로 국가우월의 냄새를 풍기어,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반드시 적절하지 못하다. 결국 우리는 좋은 단어 하나를 공산주의자에게 빼앗긴 셈이다.” (유진오 1980, 182).

그러나 유진오의 원안이 일방적으로 부결(167인중 可 32명, 否 87명)되고 윤치영 의원의 반대 주장⁸⁾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인민 개념에 대한 반감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인민주권론에 입각하여 공화국의 정당화를 기할 수 없던 분단 정부의 조건 속에서 ‘권력분립에 근거한 공화국’의 논리는 매우 실용적이며 전위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논거는 권력분립을 무시하는 파시즘과 나치즘은 물론이고 민주적 중앙 집중 원칙과 인민독재를 내세운 소비에트 정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매우 간결한 표식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해방 이후 분단의 정착 과정은 국민 주권론을 내세운 남쪽의 민주공화국과 인민 주권론을 내세운 북쪽의 인민공화국이 동일한 국체와 상이한 정체로

8) “국민이라는 것을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운운만 하더라도 나는 지긋지긋하게 들립니다. 나는 인민이라고 쓰는 데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분화되는 과정이었다. 주목할 점은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공화국의 상이한 주체가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남한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북한 헌법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남한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북한 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후술하겠지만 남한에서는 공화의 주체로서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이, 참여의 실천적 맥락에서는 시민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북한 헌법에서는 주권의 소유자 또는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근로 인민대중, 인민, 공민이 혼용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용어 사전』에 의하면 인민이란 사회발전에 진보적 역할을 하는 계급들과 계층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사회적 개념이며, 공민은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북한 헌법상 공민의 지위를 보면 공민은 인민의 개념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조휘제 2006, 368).

주목할 것은 인민주권론과 인민공화국의 주체를 지칭하는 인민 개념이 주체사상과 결합되어 북한식 사회주의에 의해 재규정되는 과정은 곧 남한에서 금기와 터부의 언어로 그것이 배제되는 과정과 중첩되었다는 점이다. 역으로 민주공화국의 주체인 남한의 국민이나 시민 개념은 북한에서 국민 주권론과 더불어 불순한 자본주의 언어로 배척되었다.⁹⁾ 공화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코리아는 이데올로기가 개념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개념사의 천혜의

9) 『조선말사전』(1989)을 보면 북한에서 시민이나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국가는 “현존 제도를 유지하며 다른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조직, 또는 이런 정치조직을 가진 나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라는 용어는 국가의 착취적 대상을 암시하는 것이기에 자국 인민에 대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 된다. 아울러 시민 개념 역시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한 행정적 단위의 주민을 뜻할 뿐이다. 결국, 공민이나 인민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주권의 담지자이자 행사자로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상호 2013).

보고라 할 수 있다.

4. 민주화 시대의 공화 개념

1) 공화 개념의 민주화

개념의 민주화란 근대 초기 이전에는 제한된 엘리트 집단 안에서만 통용되었던 전문 개념이 정치사회적으로 대중화되는 과정을 뜻한다. 미국의 경우 1830년대 이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 제도교육이 ‘공화주의를 전달하는 기구’가 되었다. 카버(Linda Kerber)에 따르면 가정은 성실과 단합을 시민적 미덕으로 교육하는 일상의 중심이라면 학교는 미국의 역사 그 자체를 공화주의의 교훈적 실례로 찬양하였다. 당시(1795-1860) 대부분의 미국 역사 교과서는 워싱턴과 독립혁명에 집중되었고, 무엇보다도 애국심과 공적 봉사를 시민의 미덕으로 강조하였다(김종길 1995, 191). 미국의 공화주의 교육에 있어 두드러진 점은 정당의 역할이었다. 19세기 건국의 아버지들은 파벌적 경향을 우려하여 정당을 공화국의 이상에 파괴적인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점차 정당들이 시민의 참여와 토론이라는 공화주의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전달하게 되면서 워싱턴이나 제퍼슨이 유포하였던 반정당주의는 점차 약화되었다(Dagger 1997, 6).

그러나 공화주의가 확산되었던 또 다른 경로는 프랑스에서 발견된다. 미국에서 공화주의의 민주화가 공식·비공식 교육에 의한 것이라면, 프랑스에서 그것은 혁명을 포함한 연속적인 사회운동과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 공화주의는 1789년 혁명의 발발과 공화국의 선포, 국민공회의 소집 그리고 공포정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애국 시민을 탄생시켰다.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방위군에 가입한 모든 병사들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누리게 되었고, 군대는 조국과 법에 대한 사랑과 모든 개인적 이익을 일반 이익에 종속시키는 숭고한 공화주의적 덕성을 고양하는 학교였다. 또한 1883년 쥘 페리는 국가에 의한 무상, 의무교육을 확정하고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교육을 독립시키기 위해 라이시테의 원칙을 확정하였다. 쥘 페리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공화주의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홍태영 2011, 244-263). 하지만 공화국을 무산시키려는 왕정과 제정의 반복된 시도들을 결정적으로 물리친 것은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 그리고 1870년 파리코뮌에 이르기까지 바리케이드를 치고 맞선 공화국 시민들의 저항과 그 안에서 전개되었던 무수한 공개 토론회였다(정태욱 2000).

한국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대중화는 미국적 경로가 아니라 프랑스식 경로에 보다 근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까지 우리가 받아들인 제도 교육은 공공선과 참여를 양양하는 민주공화국의 적극 시민이 아니라 국민교육헌장과 새마을운동은 물론이고 김대중 정부의 제2건국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반공의식과 준법질서를 위로부터 요구받아온 관제시민을 육성하여 왔다(정상호 2013). 또한, 헌법은 공화주의의 요람이자 학교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오히려 헌법이 인민의 삶 속에서 현실을 규율할 최고규범으로서의 권한과 작동의 상실, 즉 ‘헌법의 자기소외’야말로 우리 헌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서경석 2009). 오히려 그 자리를 메운 것이 비제도 영역의 민주화 운동과 촛불시위였다.

공화주의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자각은 촛불시위가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헌법1조가 구호로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탄핵반대 집회 부터였다. 이 때 외쳐진 ‘헌법 1조’는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거대 야당에 의해 탄핵되자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민주적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헌법1조 불러내기’(장진숙 2012, 83)가 시도된 것은 2008년 수입 쇠고기 반대 시위현장이었다. 당시 시위 현장 어디에서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의 구호와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 동안 우리에게 정체로서의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단지 군주제에 대비한 공화정의 의미로만 이해되었다. 그러나 촛불시위는 “시민 공동체의 안전한 삶 자체가 곧 국가라는 공화주의의 핵심 이념 대 국가를 일부 특권의 사유물인양 이해하는 反공화주의적인 이명박 정부의 대립이 극적으로 표출된 장”이었다(안병진 2008, 16).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바론 테제(Baron's thesis)로 정식화하였다.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외세의 침입에 맞서는 과정에서 애국주의, 공화주의적 자각이 격렬하게 발화하였고, 역사 속에서 자기 정체성 혹은 자기 귀속에 대한 시민

의식의 혁명이라는 결정적 전환(decisive shift)이 일어났다.¹⁰⁾ 이것이 시민적 휴머니즘의 시작이었으며, 이를 ‘바론테제(Baron’s thesis)’라 한다.¹¹⁾ 한국에서도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시민행동주의는 국민주권과 국가주권을 동시에 위협하였던 이명박 정부의 수입쇠고기 정책에 대한 항의, 즉 2008년 촛불 집회를 통해 결정적 전환으로 발화하였다. 이를 통해서 애국주의와 공화주의적 자각이 폭넓게 인식되었고, 시민들은 공동체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강화하였으며,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기며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주창하였다는 것이다 (임채원·도명록 2013, 249-265).

하지만 한국에서 공화주의적 계기를 일련의 촛불시위에서 찾는 것은 미시적 관찰이다. 이 지점에서 서구에서 시민의 행동하는 삶 즉 비타 악티바(Vita Activa)는 아리스토텔레스이후 면면히 흘렀던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피렌체 공화국은 단절의 역사 속에서 갑작스럽게 출현한 것이 아니라 로마 공화국의 재생(renaissance)이기 때문이다(포각 2011, 127).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공화 개념의 민주화나 공화주의적 계기는 1980년 광주항쟁과 87년 6월 항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 사건은 헌법 속에서 잠자고 있던 공화주의를 재현시킨 주체들, 즉 적극적으로 민주적인 공화국의 시민을 창출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항쟁을 ‘광주의거’로 명명하였고, 항쟁의 주체를 ‘광주시민’으로 규정하였다. 즉 시민은 포위와 고립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10) 포각은 바론 테제를 ‘철학적으로 순수 지식을 추구하는 관조의 추상적 삶(비타 콘템플라티바)’에서 행동적 삶, 특히 공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시민으로의 활동에 더 삶의 무게를 두는 시민적 삶(비베레 치빌레, vivere civile)으로의 결정적 전환의 원인으로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밀라노의 비스콘티가의 위협을 들고 있다. 당시 피렌체 시민들은 비스콘티 가문의 강력한 군주 잔갈레아초를 단순한 외부 세력이 아니라 카이사르이자 제국으로 인식하였고, 반대로 피렌체를 지키는 것은 공화주의 원리와 가치를 수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포각 2011, 129-131).

11) 바론 테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각의 유명한 개념인 마키아벨리의 계기(Machiavellian Moment)를 이해하는 것이 순서이다. 포각은 마키아벨리언 모멘트를 마키아벨리적 사상이 출현하는 계기와 양식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그의 저서를 공화주의 논쟁의 교과서로 만든 것은 “잉글랜드 및 미국(자유주의적) 정치의 전통이 로크적이며 베크지적인 헌정주의뿐 아니라 공화주의적이며 마키아벨리적인 개념과 가치들의 기수”였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그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포각 2011, 35).

현실을 타계할 수 있는 세상의 선도적 상(像)이었다. 지역민들이 항쟁을 통해 민주시민이라는 지위를 인식함으로써 광주=민주=시민의 동일화가 이루어졌다(유경남 2009, 166-167). 이처럼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시민 개념의 정치적 규정, 즉 민주시민이자 애국시민으로의 집단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나라의 평등한 구성원이자 주권자들로 구성된 정치공동체를, 다른 한편으로 민주공화국라는 정치적 비전을 공유하는 가치공동체를 뜻했다(신진욱 2011).

한편, 6월 민주화 운동의 적극적 의미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참정권의 회복이라는 제도적 차원보다는 시민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인 시민 덕성이나 시민의식의 질적 발전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6월 항쟁은 포카이 말한 비타악티바의 전형을 창출하였다. 6월 민주항쟁에는 전국 34개 시, 4개 군에서 연인원 5백만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여 무려 19일 동안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한국역사연구회 1991, 146). 이 기간 동안 벵타이 부대, 박수 부대, 시민 토론회가 전국 어디서나 발견되었는데, 이는 각 개인들이 자신을 대한민국 국가라는 '한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였고 거기에 부응하여 활동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홍윤기 2004, 67-68). 또한 그것은 하버마스가 영국의 시민사회 분석에서 뛰어나게 묘사한 바 있는 계급과 시민의식의 각성 공간으로서 공장지역의 기숙사, 카페, 클럽처럼 전국의 거리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적 토론과 비판의 장으로서 가동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각 개인들은 사인 차원을 넘어 공적 시민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Habermas 1991, 59-60).

2) 공화 개념의 정치화

정치화는 다양한 정치사회 집단에 의하여 개념이 정치화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특히 사회운동의 정치적 논쟁과 담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 연구자는 한국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접근을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의 입장은 공화주의에 내재된 일관된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적 관심에서 출발한다. 또 다른 입장은 공화주의를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를 공공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노력, 즉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다(이영록 2010, 75). 최근 일각에서는 공화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는 운동의 영역에서 발생한 최초의 공화주의 담론 투쟁이라 할 수 있다.

논쟁의 기본 구도는 ‘늘 그렇듯이’ 공화주의 대 오른 편인 자유주의와 왼편의 좌파 이념 사이의 대립 양상이다. 먼저, 장은주는 ‘모든 인민의 평등한 자유에 기초한 연대적 정치공동체’인 민주적 공화주의를 한국사회의 대안적 길로 제시하고 있다(장은주 2010, 258). 이어 안병진은 억압적인 단일한 가치를 강요하는 도덕주의적 공화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심의적 구성에 열려있는 심의적 공화주의에 근간한 민주 국가를 제시하였다(안병진 2006, 93-94).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좌파적 관점에서는 공화국과 공화주의 담론이 국가와 공동체를 절대화하고 토대와 계급 모순을 은폐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비판하고 있다(서동진 2010, 240-244). 한편, 자유주의적 입장의 논자들은 공화주의가 맹목적 국가주의나 강렬한 민족주의를 초래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권혁범 2009).

어떻게 시민 권력의 강화를 제도화시킴으로써 공화국을 소생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공화주의를 입론으로 삼고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참신하고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기된 대안 중 하나는 추첨으로 선출된 시민의회이다. 김상준은 국회로 대표되는 대의체제는 이미 무기력증을 드러냈고, 행정부의 관료적 보완과 사법부의 심판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공공의제에 대해 시민 심의권을 행사할 시민의회 설치를 제안하였다(김상준 2007, 182-184). 오현철 역시 기존의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제4부, 즉 ‘국민부’ 설립을 제시하였다(오현철 2007, 293-312). 박명림은 핵심 국가기구의 엄정한 감찰과 국민인권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한국은행 등 독립된 국가기구를 제4부로 독립시켜 4권 분립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명림 2010, 93). 끝으로 이지문은 ‘주의’가 아닌 ‘제도화의 도구’이자 배제된 다양한 사회주체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즉 심층(deep) 민주주의를 구현할 방안으로 추첨제 민주주의를 제안한 바 있다(이지문 2012, 45).

Ⅲ.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공화 개념의 특징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논문은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공화 개념의 기원과 정착 과정을 탐구하면서 서구와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를 앞서 언급한 공화와 화평과 단합을 강조하는 대동사상과의 연관성이 다. 동양에서 대동사상은 중국의 캉유웨이, 쑨원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정조에 이르기까지 공존과 화합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지칭한다. 그러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국체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다. 한국 정당사에서 가장 오래 존속하였던 민주공화당의 당명이 압도적 다수를 얻은 데에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었다.¹²⁾ 서구의 경우 공화주의는 공동선과 공동체를 강조하지만 거기에는 ‘갈등의 민주적 제도화’라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 마키아벨리가 독창적이고 위대한 공화주의 사상가로 손꼽히는 이유는 그가 ‘갈등을 새로운 제도적 변화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저술은 평민과 귀족 등 국가의 상이한 요소들 사이의 첨예한 이해 대립을 능란하게 조정할 수 있었던 로마의 공화정에 대한 가장 뛰어난 묘사로 충만하기 때문이다(포사이스 1994, 139). 그의 논지가 돋보이는 것은 다른 동시대인들과 달리, 로마의 혼합정을 단지 계급간의 화해와 조화라는 정태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한 합의 혹은 역동적 안정을 통렬하게 인식했다는 점이다(장진숙 2012).

갈등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 방안의 치밀한 모색은 메디슨의 공화주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제는 상식이 된 “파벌을 통제하기 위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질병보다 더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Federalist 10)는 메디슨의 진단은 인간 본성에 근거한 파벌을 제한하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파벌의 영향력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발전하였다. 메디슨의 창의성 역시 마키아벨리

12) 1963년 1월 17일 신당발기인 71명이 당명을 놓고 최종 투표를 하였는데, 민주공화당이 49표, 공화당이 12표, 정화당·민화당·새공화당이 각 2표, 민생당·새공화당·협동당이 각 1표로 민주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를 얻어 신당의 당명으로 확정됐다(『동아일보』, 2012.2.19).

와 마찬가지로 갈등하는 집단들의 이익과 권리를 배제하지 않고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정치참여를 최대한 허용하는 데서 출발하되, 다수 지배를 스스로 견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있다(최장집 2005, 19). 이처럼 갈등과 파벌의 불가피성과 제도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미 아테네에서부터 공화주의의 핵심 장치인 혼합정체를 고안하게 하였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의 공화 개념이 국가의 정부형태 또는 정체라는 의미로, 즉 미국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와 유사한 경로를 밟게 되었다는 것이다. 애초 서구에서 공화주의는 그 기원에 있어 공동선의 지향이라는 통치의 에토스를 표현하는 용어였다. 국가형태 문제가 공화국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는 했어도 공화국이 특정 국가형태를 전제로 이해된 것은 아니었다. 공화국이 국가형태로 군주국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후기부터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16-18세기 동안에 공화국은 정치적 이상이나 헌법상의 원리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이런 전통이 1970년대 이후 포콕(2011)과 스키너(2007)의 역작이 속속 등장하면서 새롭게 공화주의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공화주의가 바람직한 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에서 정부형태로 축소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연방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폭민정치로 배격하며 공화주의를 직접 민주정이 아닌 대표제로 규정하였던 것에 반해 반연방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인민주권과 정치적 평등과 직결시켰다. 그 결과 고전적 공화주의의 초기 규정과 달리 미국에서는 공화주의가 정부의 이상적 특성이나 목표 대신에 특정 정부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미국식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하에서 하나의 세계관, 가치관으로서 공화주의가 지녔던 도덕적 힘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차원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정경희 1993).

유형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공화는 개화파의 공민동치의 입헌군주론을 거쳐 임시정부의 비군주 국가론, 해방 이후 권력분립에 기초한 정부형태론으로 변화하여 왔다. 그러한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화의 개념적 발전은 적어도 민주화 이전까지는 시민참여와 공동선을 강조하는 아테네의 고전적 공화주의나 법치주의와 비지배 자유를 강조하는 신로마형 공화주의와 달리 압도적으로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연속성을 갖고 있다. 민주화 이전의 공화 개념이 정부형태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온 미국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에 근접하다면,

민주화 이후의 공화 개념은 시민참여와 공공성을 중시하는 시민적 공화주의 또는 계발 공화주의에 경사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이렇게 볼 때 비군주 정부형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공화를 수용한 우리의 경험은 처음부터 그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설정한 것(이영록 2010, 35)이었으며, 정치공동체의 이상적 원리로서 공화를 대면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 최근의 일이었다는 비교 개념사적 평가가 가능하다.

끝으로 동아시아라는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역동적인 공화 개념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공화 개념의 민주화는 학교나 헌법과 같은 제도나 공식 교육이 아니라 4.19에서부터 촛불시위에 이르는 장구한 민주화 운동을 통해 진전되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공화주의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이나 헌정주의 때문이 아니라 광장의 정치, 거리의 정치를 통해 탄생되고 성장하였는지 모르겠다. 아울러 공화 개념의 이데올로기화 역시 남다른 관찰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 분단은 국민 주권론과 인민 주권론에 기초한 두 개의 공화국을 출현시켰다. 분단 체제의 고착은 공화의 의미와 주체를 전혀 다르게 발전시켰다. 한쪽은 분할할 수 없는 인민의 집단적 의지의 전일적 관철을 민주 공화국의 요체라 강변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긴장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양자의 균형적 공존을 모색하여 왔다. 공화국은 공존 사상이건만 인민과 시민은 상호 배타적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국경 안에 갇혀 있다. 한국의 공화주의가 이제 이론적 탐색을 넘어 운동과 실천의 프로그램으로써 정치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동아시아의 비교 맥락에서는 선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화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과제는 공화주의의 약한 고리로 지적되어 온 제도적 처방이나 유형화, 또는 역사적 비교 연구만이 아니다. 정말 부러운 것은 마키아벨리언 모멘트를 포착해 낸 포카의 예리한 시선이다. 어쩌면 우리의 게으름과 타성이 우리의 역사 안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와 비베레 치빌레(Vivere Civile)를 놓치고 있는 것 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가 발명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의와 투쟁을 통해 발견 또는 재생(renaissance)되는 것이라면 말이다.

【참고문헌】

- 강정인. 2009. “니콜로 마키아벨리- 서양 근대정치사상의 탄생.” 강정인 편.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 책세상.
- 곽준혁. 2005.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 곽준혁. 2008. “왜 그리고 어떤 공화주의인가?” 『아세아연구』 제51권 1호.
- 권혁범. 2009. “민주적 애국주의에 대해서”, 『시민과 세계』 15호.
- 금 민. 2007. 『사회적 공화주의』. 박종철출판사.
- 김경희. 2007. “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106호)
- 김경희. 2009. 『공화주의』. 책세상.
- 김동택. 2006. “『독립신문』의 근대국가 건설론.”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 김동훈. 2011. 『한국헌법과 공화주의』. 경인문화사.
- 김상준. 2007. “헌법과 시민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헌법 다시 보기』. 창작과 비평사.
- 김육동. 2010.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 김육훈. 2012.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Humanist.
- 김종길. 1995. “19세기 미국 공화당의 미국적 공화주의.” 『경북사학』 제17·18 합본.
-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 데이비드 헬드, 박찬표 역. 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 리차드 대거. 2007. “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 『시민과 세계』 제10호.
-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 멜빈 릭터 저, 송승철·김용수 역.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 소화. 2010.
- 박근갑 외. 2009.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 박명림. 2010. “민주공화국에서 국가를 다시 생각하다.” 도정일·박원순 외.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휴머니스트.
- 박주원. 2006. “1900년대 초판 단행본과 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난 사회담론의 특성.” 『근대 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 박찬승. 2008.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역사학보』 200호. 역사학회.
- 박찬승. 20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돌베개.
- 박현모. 2007. “박정희의 ‘민주공화주의’관 변화 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동양정

- 치사상사』. 6권 2호.
- 박현모. 2007a. “일제시대 공화주의와 복벽주의의 대립.” 『정신문화연구』 30권 1호.
- 박현모. 2007b. “박정희의 ‘민주공화주의’관 변화 연구.” 『동양정치사상사』 6권 2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서경석. 2009. “민주주의와 헌법개정.” 『법학연구』 제12집 제3호.
- 서동진. 2010. “과연 공화국만으로 충분인가: 애국주의 논쟁을 되짚어보아야 할 이유.” 『시민과 세계』 17호.
- 서정기. 2001. 『새 시대를 위한 시경(하)』. 살림터.
- 송 민. http://www.korean.go.kr/nkview/nklife/2001_3/11_7.html(검색일 20130515).
- 신복룡. 2003. 『대동단심기』. 선인출판사.
- 신용하. 1986. “19세기 한국의 근대국가형성 문제와 입헌공화국 수립운동.” 『한국의 근대국가형성과 민족문제』. 문학과 지성사.
- 신우철. 2008. 『비교헌법사: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법문사.
- 신진욱. 2007.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이밍에서 도덕적 감정의 역할: 5.18 광주항쟁 팸플릿에 대한 내용분석.” 『경제와 사회』 73호.
- 신진욱. 2008. 『시민』. 책세상.
- 안병진. 2008.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보수주의 위기의 뿌리』. 풀빛.
- 오병현. 1993. “군부독재의 칼: 계엄령 연구.” 『신동아』 11월호.
- 오현철. 2007.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헌법 다시 보기』. 창작과비평사.
- 유경남. 2009. “광주5월항쟁 시기 광주의 표상과 광주민주시민의 형성.” 『역사학연구』 제35호.
- 유길준. 1996. 『유길준전서』 제1권. 일조각.
- 유진오. 1980. 『憲法起草回顧錄』. 일조각.
- 이계일. 2011. “공화국 원리의 함의에 대한 이념사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1권 2호.
- 이국운. 2001. “공화주의 헌법 이론의 구상.” 『법과 사회』 제20호.
- 이동수. 2007. “개화와 공화민주주의-독립신문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동수. 2010. “르네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정부: 자유와 법치의 공화정.” 『한국정치연구』. 제19집 제2호.
- 이명순. 2007. “공화주의의 유형과 그 비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29호.

- 이병천. 2004b. “공화국과 자본주의: 무책임 자본주의에서 시민자본주의로.”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제6호.
- 이승현. 2006. “신민회(新民會)의 국가건설사상 - 공화제를 향하여.” 『정신문화연구』 102호.
- 이영록. 2010.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42.
- 이지문. 2012. 『추첨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이담.
- 임채원·도명록. 2013. “2012년의 진보-보수 균열과 시민행동주의: 공화주의적 계기 속 바른테제의 적용.” 『의정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제38호).
- 장명학. 2009. “해방정국과 민주공화주의의 분열”, 『동양정치사상사』 8(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장은주. 2010. “민주적 애국주의와 민주적 공화주의.” 『시민과 세계』 17호.
- 장진숙. 2012. 『한국에서 공화주의 논의의 의미와 과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성. 2011. 『가로세로 한국사 퍼즐』. 미네르바.
- 정경희. 1993. “혁명기 및 건국 초기 미국의 정치사상.” 『미국사연구』 제1집.
- 정상호. 2012. “동아시아 공민 개념의 비교 연구.” 『동북아연구』 27권 1호.
- 정상호. 2013.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한림대출판부.
- 정태욱. 2000.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 『영남법학』 6권.
- 조승래. 2010. 『공화국을 위하여』. 길.
- 조희제. 2006.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변천 내용에 관한 고찰.” 『윤리연구』. 한국윤리학회.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최장집. 2005.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국과 한국」. 로버트 달.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박상훈·박수형 옮김. 후마니타스.
-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 틴 스키너 저, 황정아·김용수 역. 2012. 『역사를 읽는 방법』. 들베개.
- 틴 스키너. 2007.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조승래 역. 푸른역사.
- 포사이스·킨스소퍼 저, 부남철 역. 1993. 『서양정치사상입문: 플라토에서 루소까지』. 한울.
- 포카. 2011.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1, 2』. 콕차섭 역. 나남.
- 허동현. 1994. “1881년 朝士視察團의 明治 日本政治制度 理解.”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통권 86.
- 홍윤기. 2004. “시민적 실존의 철학적 소묘.” 홍성태 역. 『참여와 연대로 본 민주주의의 새 지평』. 아르케.

홍태영. 2012. “프랑스 공화주의의 전환: 애국심에서 민족주의로.” 『사회과학연구』 20권 1호.

Ball, Terence. 1988. *Transforming political discourse : political theory and critical conceptual history*. Blackwell.

Dagger, Richard, *Civic Virtue*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7).

Fung, Archon and Wright, Eric Olin. 2003. *Deepening Democracy: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Verso, London · New York.

Habermas, Jurgen. 1991.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The MIT Press.

Verba et al, 2002. *Voice and Equ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13.08.23. 심사일: 2013.10.17. 게재확정일: 2013.10.20.
--

【ABSTRACT】

The Research on development of concepts of the republic in Korea

Jeong, Sang-Ho | Seowon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oncepts of republic in modern Korea. Especially this paper focus on the relations of social movements and the concepts of republic which attract attention researchers recentl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cepts of republic could elucidates universality and speciality of modernization in Korea which are very different in the regimes. It will be a cornerstone that can explain how Korean became republican civic. This paper has two academic significances. One is elucidation of specific meaning of concepts of republic in Korean which place emphasis on unity and harmony. At least until the democratic periods, meaning of the republic overwhelmingly connoted not ideological visions and doctrines but political regimes. The other is to explain dynamic relation of social movements and concepts of republic. Especially the epoch-making events of Korean modern history, Kwang-ju and June democratic movement in 1980's and candlelit protests stormed the streets in 2004 and 2008 made a clear and collective identity of republic and republican civic in Korea. That is, the republicanism and the modernized republican citizen had been created by the social movements and civic protests.

Keywords : concepts of the republic, history of concept. Koselleck, Baron's thesis, republicanism, social movements

Key Words | concepts of the republic, history of concept. Koselleck, Baron's thesis, republicanism, social movements